

박형준 / 5월 / 기출GS / 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1	16.5	12	57.5	1	2.94%	5	34
562188	17	10.5	18	11	56.5	2	5.88%	4	
563199	18	11	16.5	11	56.5	2	5.88%	5	
562576	15.5	10.5	16	12	54	4	11.76%	5	
563195	14.5	9.5	15.5	13	52.5	5	14.71%	4	
562320	15.5	10	16.5	9	51	6	17.65%	4	
563311	14.5	10	15.5	11	51	6	17.65%	5	
563528	15	9.5	16	10	50.5	8	23.53%	4	
562403	15	9.5	16.5	8.5	49.5	9	26.47%	4	
562813	16	8.5	13.5	11.5	49.5	9	26.47%	3	
563029	14.5	11	14.5	9	49	11	32.35%	4	
563423	17.5	9	16.5	5.5	48.5	12	35.29%	5	
562434	13	10.5	17	7.5	48	13	38.24%	5	
562176	14.5	10	14	8	46.5	14	41.18%	4	
562189	16.5	8.5	12	9.5	46.5	14	41.18%	3	
562350	14.5	10	12.5	9	46	16	47.06%	5	
562305	10.5	8.5	14.5	12	45.5	17	50.00%	5	
562397	14.5	10.5	12.5	7	44.5	18	52.94%	4	
562508	15.5	9	13.5	6	44	19	55.88%	5	
563344	12	9	15	7.5	43.5	20	58.82%	4	
563002	11.5	8.5	15	8	43	21	61.76%	4	
562924	16	11	9.5	6	42.5	22	64.71%	4	
562358	13.5	9.5	13	6	42	23	67.65%	5	
562578	12.5	9.5	13	6.5	41.5	24	70.59%	4	
562354	13	8	15	5	41	25	73.53%	5	
563033	14	7.5	14.5	5	41	25	73.53%	3	
562342	11	9	12	8	40	27	79.41%	3	
562783	11	10.5	12.5	5.5	39.5	28	82.35%	4	
562207	11	9	14	4.5	38.5	29	85.29%	4	
562227	11.5	9	11.5	5.5	37.5	30	88.24%	5	
563474	15.5	11	10	0	36.5	31	91.18%	5	
562408	5.5	8.5	14	7.5	35.5	32	94.12%	5	
562326	8	5.5	10.5	4	28	33	97.06%	4	
562372	10	10.5	0	0	20.5	34	100.00%	5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4회/1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문제 1번은 PCT 관련 논점들과 함께, 무효사유들을 적절히 찾아야 하는 논점 추출형 문제였습니다. 다만, PCT의 복잡한 특례 규정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영어원문, 최종국어번역문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는 PCT가 출제될 경우 단골로 빈출되었던 논점이었습니다. 기쁠에서도 이를 다루는 만큼, 작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보정에 관한 47조와, PCT의 특례 규정인 208조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답을 맞추는데는 어렵지 않으셨겠으나, 조문 병기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무효심판 청구취지 및 그 청구이유 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본안에 앞서 적부를 먼저 판단해주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 청구항 1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 3에 대해서는 결론이 갈릴 수 있고, 다만 장래 실시 예정임을 들어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p> <p>다만 강사님 답안처럼 설문 4에서 청구항 3의 무효사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답안 배치 상 깔끔하기 때문에 청구항 1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만 적으셔도 좋고, 청구항 3에 대해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4) 설문 4

설문 4는 설문 3에서 청구항 3의 무효사유 존부를 검토하지 않으신 경우, 진보성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당부남자로 주장을 전개해 주신 답안이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 다만 설문 3에서 청구항 3의 무효사유 존부를 이미 검토하신 경우 당부남자로 양을 모두 채우신 경우에도 배점에 맞게 점수 드렸습니다. 당부남자 중 일부만 적용되더라도, 하나의 세트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한 경우 이는 보완명령과 달리 국제출원 일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비교적 논점을 찾는것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포섭이나 답안의 가독성 측면에서 차이가 났었고, 답을 틀리신 경우도 꽤 있었는데, 보완명령, 보정명령 등 PCT 관련 오개념이 있으신 경우 이번 기회에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4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발명의 단일성,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논점 제시형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논거를 작성하라는 형식의 설문이 자주 출제된다는 점에서 많은 연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단일성 요건 및 사안포섭을 해주셔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다만 공통되는 기술적 특징이 인정되나, 이것은 인용발명 1,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개선” 되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까지 이미 마친 이상, 단일성 요건을 만족합니다. 해당 설문의 경우 이 논리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신규성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판례와 함께 사안포섭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판례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만 사안포섭에서 투명한 잉크관에 의해 잉크관 내부, 잔량을 확인 가능하다는 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포섭하신 경우 더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결합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방법에 대한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주신 후,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논거를 다각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템플릿이 존재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안 포섭 시, 잉크의 색을 자유롭게 변환하는 기능 등의 구체적으로 포섭하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p>	

3. 소결

논점 자체는 간단하나, 포섭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포섭은 단순히 판례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판례가 실시한 대로 사안을 녹여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섭하는 예시를 이번 기회에 강사님 답안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4회/3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3번은 조약우주에 대한 판단시점 소급이 주논점인 문제였습니다. 조약우주는 그 요건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복잡한 날짜들이 나열된 경우, 적절히 타임라인을 그려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각 청구항 별로 판단시점이 언제로 소급하는지와 그에 따른 거절이유를 검토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요건에 맞춰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청구항 2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에서 둘 이상의 선행문헌을 결합하여 신규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짚어주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2018.7.1.일 출원의 경우, 청구항 1, 2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이 논점이었습니다. 청구항 1의 경우 미국 원출원의 경우 1년 도과, 일부계속출원의 경우 최선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최선성 위반이라는 점을 찾아주신 답안이 많지 않았습니다.</p> <p>청구항 2의 경우 일부계속 출원일로 소급되어 신규성 진보성 인정된다는 논리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의 경우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재심사청구의 장점을 묻는 단문 문제였습니다. 모든 차이점을 모두 찾아 작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가독성 좋은 목차 구성과, 법전을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3. 소결

조약 우주의 경우 그 적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답을 틀릴 경우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논점이므로, 답안 작성 전 문제풀이 시간에 판단 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4회/4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4번은 기재불비, 분할출원, 우선심사신청이 논점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항이 주어지고 기재불비를 모두 찾는 문제의 경우, 가능한 모든 기재불비를 찾는 것이 일반론 작성보다 득점에 유리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재불비를 최대한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청구항 별 기재불비를 모두 찾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청구항 2~5에 걸친 총 9개의 기재불비를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기재불비를 찾지 않고, 일반론을 길게 적어 분량을 채우시는 것은 이와 같은 유형에서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원출원의 청구항 중 4, 5를 삭제하고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에서 제시하는 대로 청구범위를 그대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우선심사 사유를 모두 검토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 사유의 경우 법전에 없기 때문에 암기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논점을 전략적으로 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은 1차 때처럼 두문자 따서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놓으시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3. 소결

전체적으로 청구항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그에 대해 논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뤘던 회차였던 만큼, 해당 유형에 대해 보다 친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당황하지 않고, 시간안에 고루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GS에서 당황해보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문래기

I 실용(1)

1 영어 원문 범주 기위

(1) 관련 규정 - 法 2003.12.22 2항 1호의 5기

당사자 전이로 시에 출원된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결론 - 최초 명세서 등의 기위

영어 원문 최초 명세서 등의 기위로 간주함

(3) 구체적 역할

영어 원문 신규사항 추가 금지 하는 역할로 처리함 (413조항)

2 국제 번역문 범주 기위

(1) 관련 규정 - 法 2012. 5. 18

당사자 전이로 시에 영어로 제출한 출원서류 번역문으로
제출 가능하게 함

(2) 결론 - 명세서 등의 기위

국제 번역문은 명세서 등의 기위로 간주함

(3) 구체적 역할

국제 번역문은 신규사항이 됨

(4) 그의 역할

국제 번역문으로 신규사항 추가 금지 범주 기위 (法 413조항)

II 실문(2)

1 물레짐 - 보정관련 심사관 판단의 적부 - 법413

당사와 전이를 기재 쓰로 했서로 강박한 보정 판단
하여 심사관 판단이 적부 문제

2 관련 규정 - 신규사항 추가금리 - 법413 2항

과불기타 방조 기재 신규사항 추가하는 것은
금리 한다.

3 PCT 출원의 경우 신규사항 추가금리 개정규정 범위

(1) 명어 원문 범위 - 법2083 3항

PCT 출원도 국내출원과 마찬 가리 413 3항 관한 에 따라
명어 원 문 범 위 여 야 한 다

(2) 국어 번역문 범위 - 법2083 4항

PCT 출원의 경우 국내출원과 마찬 가리 413 3항 을 한 따라
국어 번 역 문 범 위 여 야 한 다.

4 사안의 경우 - 법2083 3항 위반

국어 번 역 문 안 판단 하는 것은 법2083 3항 에 반 한 다

5 결론 - 심사관 판단 부적법

심사관의 판단 은 부적법 함 으로 부 적 한 결 론 이 필 요 하 는.



II 실문(3) 5.5

1 문제점 - 2의 무효심판 - 법 1333

공익상 하라 갖는 특허가 관련하여 소멸 시키는 제도이다.
2의 무효 심판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무효심판 판단 대상 - 보정 후 청구항 - 법 403

보정은 효력이 있으므로 보정 후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 심판은 판단 해야 한다.

3 주부 (청구항 1만 있음)

(1) 청구항 1 제한 - 법 1333 1항

무효 심판은 이해 관계인과 심사관 만 제기 가능하고

(2) 이해 관계인 범위 제외

이해 관계인 이란 불이익 받거나 불이익 받을 것으로
대당 특허권 소멸 시켜야 하는 사람이라

(3) 사안의 경우

1) 청구항 1 (주부)

2은 수관 (에 의한 특허권)을 실시하는데 청구항 1에 이해관계인

2) 청구항 3 (주부)

2은 청구항 3의 실시를 명문 실시하고 있지 이해관계인
없다.

도출안



4 본안 - 신규사항 추가

(1) 관련권 - 제41조 2항

과외권을 위해 특허 발명의 본안 권리 면에서 동 범위에 해당

(2) 보장 소명 관련 위시제

명문지 지령은 없으나 보장의 소명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항 추가요건은 권형상 인정되어야 함

(3) 사안대 경우

1) 명어 권을 범기 (소3)

명어 권을 범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기제가 없이 제43조 전항만 보이기

2) 3대 번역을 범기 (제33)

3대 번역술에는 구형에 대한 기제가 있다.

5 결론

(1) 무효심판 항 취지

위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이 무효 되어야 합니다

(2) 무효심판 항 이유

1) 적부 - 이해관계인

근은 항항 1의 신수권자로 이해관계자 있습니다

2) 본안 - 제41조 2항 위반

항항 1은 명어 권을 범기 외 보령으로 신규사항 추가

요건의 보령은 해당합니다

IV 실문내

6.5

1 甲 특허의 하라 권리

(1) 관할권

1) 상대방에게서 2항

특허는 공개에 대한바 권리 발생과 동일하면 안된다

2) 권보행 의미 하라 3항 2항

기술 발권 돈을 지체 특허는 권리 발생으로 쉽게 실시하면 안된다

(2) 판단시점 - 국제출원일 - 2016.05.01

~~PCT 출원으로 국내를 기점으로 국제출원일 인정한~~

~~4안은 보장이 아닌 무관한 것으로 출원일 주기가 된다.~~

(3) 권리여부 - 증거 자료 1안 권리

1) 증거 자료 1 (각각)

2016.04.01 공개된 증거 자료 1은 출원일 2016.05.01

보다 빠르므로 권리 있다

2) 증거 자료 2 (각각)

2016.06.01 공개된 출원일 보다 늦어 권리 안된다.

(4) 사안의 경우 - 신재생 권보행 판단

1) 창작성의 신재생 인정

증거 자료 1 수반 시은 수반 (타) 실질적 동일하지 않다

2) ~~창작성의 권보행 - 제한적 적용~~

수반 시은 보다 수반 시은 생략한 것이 쉽게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된다



2. 2가 가능한 주장

(1) 주장 ① 당면 문헌 (소극)

특수재는 문헌상에서 기능을 고려하여 문헌상으로도
특히 문헌상에서 기재 않은 이상 당면문헌으로 인정된다

(2) 주장 ② - 권리 범위 부정 (소극)

1) 공리가설 제외 범위 특수재

특정한 공문 영역에 기여함을 기함함으로 권리의 과잉이
기여함이 없으면 권리 범위 부정된다

2) 사안의 경우 - 권보성 작용 불가

권보성 위반인 경우 공리 기술 제외 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주장 ③ - 권리범용 항변 (적극)

1) 관련 항변 다수이전 특수재

사각 개리 원복상. 공문상 기여하지 않은 경우 권리항변
은 실질적 권리 및 공정성 고려하여 권리 범위
에 따라 배제 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권보성 위반 사안 등이 권리범용 항변 가능하다

(4) 주장 ④ - 과잉기술 항변 (대안적 적극)

문헌상에서 공문으로 과잉기술 항변은 인정하고 권보성
기반인 경우 인정하지만, 권보성 위반 사안을 증명
해야 할 것이다

	문제-2
2	실문(1)
1	발명의 단일성
	<u>(1) 원칙 요건 - 법 45조 1항 본</u>
	특허권은 하나의 발명이라 하여 하나로
	<u>(2) 예외 요건 - 법 45조 2항 본</u>
	하나의 발명적 발명 개념을 형성한 원 발명 하나
	의 출원으로 출원 청구하다
	<u>(3) 예외 요건 판판기준 - 법 45조 2항</u>
	특허 발명의 공표된 기술적 특징이 <u>있어야</u> 하고
	기술적 <u>특징은</u> 개선된 권어야 한다
2	<u>제1항과 제2항 단일성 요건 만족 주장 논리</u>
	<u>(1) 원칙적 요건 부합 여부 (33)</u>
	항상 1과 항항 2의 1군 발명은 3성 한다.
	<u>(2) 예외 요건 부합 여부 (적극)</u>
	1) <u>공표된 기술적 특징</u>
	<u> 甲 특허는 권리(1)과 양관(2)(3)을 공통 권 가진다</u>
	2) <u>개선 여부 (적극)</u>
	<u> 특허권과 양관을 결합한 것은 새 발명으로</u>
	<u> 부러 개선 외 별도로 심사 불허</u>

II 실용(이) 25

1 문제점 - 신규성 - 법적요항

특허권 침해 대가인바 공시발명이 증명하지 않아야 한다

2 인용발명 | 공시여부 (각각) - 법적요항 관련

인용 발명 1은 반도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인용발명
공시 성격이 인정된다

3 신규성 판단 방법 - 실질적 동일 판례

신규성은 공시발명과 3성이 동일하기 효과를 항각하여
실질적 동일 한지 판단 해야 한다

4 사면의 경우 - ^{항각} 신규성 있음

(1) 구성 차이 (각각)

특정 잉크관(2)와 잉크관(2')의 차이가 있다.

(2) 효과 차이 (각각)

잉크관의 잉크액은 확인할 수 있는 점에의 효과
차이가 있다

(3) 실질적 동일 여부 (소극)

잉크관 잉크액 확인 기구에 따라 차이가 심해
3성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 동일하지 않다

(4) 소결

이 특허 청구항은 신규성이 있다

II 실문(3)

6

1 출제권 - 권보성 - 2029년 2항

기술 분야 산업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함께 실시하면 안된다

2 청구항과 복수성 요소 별명 여부 (각각)

청구항은 권보성 1, 3, 4로 되어 복수성 요소 이다.

3 복수성 요소의 권보성 요인

(1) 판관 대상 위상제

권보성이 복수의 권보성 유익을 결함의 권보성으로 판관
해야 한다. 각 권보성으로 판관해서는 안된다

(2) 결함요인 위상제

성형 방법에 결함요인 등에 개한 된 양이
있을지 유익 하에 판관이 필요 하다.

(3) 판관 방법 위상제

특히 방법이 성형 방법에 비해 권보성 관련하기
효과를 고려하여 판관 한다

(4) 상승호라 위상제

성형 방법에 비해 상승호라 권보성
을 양호한 후 ~~있을 지~~ 판관 ~~권보성~~ 판관



4 사후적 고찰 크기 제1회

특히 발명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 상재로 권보성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에 반한다

5 사안의 경우 - 항상 2 권보성 개요

(1) 논거 ① 권제

인용발명 2와 인용발명 3에 각 3선이 공개되었는데
 사실 만일 권보성 부경 안된다

(2) 논거 ② 결합의

인용발명 2와 인용발명 3에 누름 강리 큰 인공관과
결어붙게 결합 가능하거든 요인이 없다

(3) 논거 ③ - 유기적 결합의 권제

실기본 (1)과 색변한 인공관 (3)에 누름 강리 (4) 큰
결합 강도 인데 해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색
변환을 지극히 적은 거기에 볼 수 없던 산성효과 있고
이들 동반의 기를 띠어 어렵다

(4) 논거 ④ - 사후적 고찰 금지

이러한 항상 2가 결합되었는데 사실은 안 상재로
권보성 간간 하면 안된다

(5) 소결 - 권보성 인정

항상 2는 인용발명 1, 2와 비교하여 3선이 권보성
보다 뒤에 나

165

문제-3

2. 실문 11)

1. 특허 무효 판단 시점

(1) 조약 우선권 규정이 적용

1) 특 54조 이외 권리

당해가 특허를 위해 조약선주 출원한 관한시점 소항해

2) 무효 실화

신출원시 관한시점과 최선신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신출원 이후
명세서 및 조약 범위 내에서 출원 해야 한다
출원시 특허 최초 국가 및 신출원의 연월일 표시에
관영시를 제출 필요하다.

3) ~~사안~~ 경우 효과 - 관한시점 유형기 위탁

① 신출원시 최초 명세서 및 고명에 기재 되어 있거나
기재 되어 있도록 마찬 가지 만들 소항해

4) ~~사안~~ 의 경우

(1) 다른 신출원에 대한 우선권 규정 적용 (특 33)

2017.05.이 부터 2018.02.이 1년내 출원하여
항상 1에 대한 우선권 규정 적용된다

(2) 일부 계속 출원에 대한 우선권 규정 적용 (특 33)

2017.08.이 부터 2018.02.이 1년내 출원하여
항상 2에 대한 우선권 규정 적용된다

(3) 소결 - 특 무효 판정 규정



별첨 3번 주장이 인정되므로 항항 1, 2에 대한 주장 기각한다

(2) 항항 별 관판4점

1) 항항 1 - 2017.05 이

항항 1은 2017.05.이 기준 공거 여부 판단한다

2) 항항 2 - 2017.08.이

항항 2는 2017.08.이 기준 공거 여부 판단한다

3) 항항 3 - 2018.02.이

항항 3은 2018.02.이 기준 공거 여부 판단한다

2 거절 이유 타당성 (소극)

(1) 관련 규정 - 특허법 1항 2항

(특허는 크게 제가임바 공거 발명을 특허 하기
실어 되면 안된다. 신규성, 진보성이 필요하다)

(2) 사안의 정황

1) 항항 1 - 신규성 인정

인용발명 1 권리 시점이 관판4점인 2017.05.이 보다

늦으므로 권리 인정 보해 특허법 1항 2호 판정한다

2) 항항 2 - 신규성 인정

인용발명 2 권리 시점이 관판4점 2017.08.이 보다

늦으므로 권리 인정 보해 특허법 1항 2호 판정한다

3) 항항 3 - 진보성 인정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의 선행기술의 차이가 없고

인용발명인 D' 만으로 ABCTCD 가 구현
공한하지 않다

3 결론 - 모든 거절이유 부각

거절이유 요지 1.2.3 의 각각 요지 없기 때문
실체적 관점에 문제가 없다

II 실용성 -1) 2.5

1 항상의 특허 판단 기준

(1) 미국 헌법 원칙 개한 구현 요지 부족 (소극)

(2017. 05. 이 로 부터 1년이 지난 2018. 01. 이
 헌법으로 인해 구현 요지 라함 지 않 다.

(2) 판단 기준 - 2018. 01. 이

구현 요지 라함 지 않 다 이 유 로 판 단 하 는 다.

2 거절 이유 타당성

(1) 인용 발명 공 의 여부 (극극)

(2017. 06. 이 공개 되어 출원 일 2018. 01. 이 공개
공 의 기준 극 의 인정 권 한

(2) 상 의 판 단 방 법 제 수 제

상 의 판 단 방 법 제 수 제 가 공 의 판 단 하 는 다

특허법 제 2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판관 할지

(3) 사안의 경우

1) 구상 동일 (각각)

항상 A+B의 인공발명인 A+B가 동일하다

2) 효과 상각 (미세한 차이)

모두 공로로부터의 개량 발명이므로 동일효과이다.

3) 소본 - 실용적 동일

항상 같은 인공발명이고 실용적 동일하다.

3 결론 - 거절 사유 타당

거절 사유 1의 조각 1항과 위반사유는 동일하므로 항행이 전치된 변조

III 실용 (2)-2

3.5

1 항행 2 등치된 판관시점

(1) 일부 계속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적부 (각각)

일부 계속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어려워 1년 이내 이유로 인정 된다

(2) 미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적부 (소)

앞에서 실권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관 시점 - 2017.08.01

2017.08.01 기준으로 권리 부여받은 판관 할 것이

필요 하기

2 방향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1) 공리 기술 목적 - 인용발명 1만 인정

(인용발명 2는 신규성 주장 사항과 비교하여 공리 기술
이 아니고 인용 발명 1만으로도 판단 필요하다.

(2) 신규성 판단 (인정)

1) 구성 하이 (각각)

인용발명 1 A+B 에 비해 방향 2 는 C가 추가되었다

2) 소결 - 실질적 동일 아님

레이블은 전체 특정 화 인접에 신규성 인정 포기

(2) 진보성 판단 (인정)

1) 하이

레이블 C의 유무가 인용발명 1과의 하이다

2) 소결 - 하이/로우 어려움

공로로 보아 레이블을 다는 것은 동일한 기술 주제에
관련 할 수 없다.

3 결론 - 방향 2 신규성, 진보성 인정

레이블 C의 하이/로우 인용발명 1로 하여 신규성 인정 가능

IV

실용(3)

3.5



1 관현 규정

(1) 개심사 형식 - 법 61조의 2

출연인 전시는 위해 보편과 함께 기발결정 불복 가능함

(2) 기발결정 불복 심판 - 법 132조의 11

심사의 완결성 확보와 골라권 보충을 인정하는 제도 이다

2 비교

(1) 공동점

모든 기발결정에 개판 불복할 제도 이다, 간단易懂하다.

(2) 하이점

[기판] 즉 개심사는 특허청에서 심판은 심판원에 한다

[규제] 개심사는 심사관 심판은 심판원이 한다

[보정 책] 개심사는 보정이 50 심판은 안된다.

[불복 방법] 개심사 후 다시 심판 재판 심판은 안된다

[비용] 개심사의 원은 기발결정 본보다 싸다.

[의견] 개심사는 이견이 선임이고 심판은 불수다

3 개심사 청구의 강령

[비용] 청구에 비해 비용이 싸다

[보정 책] 심판은 보정 불허지만 개심사 후가

[불복 방법] 각하에 개판 불복 가능 하다

문제-4

I 성분(1)

7.5 12

1 항항 1 - 거절 이유 없음

항항 1에 는 거절 이유가 없다

2 항항 2 - 법 423 항 2호.

(1) 크성비 관련 회색

항항에 크성비 여 대한 기재가 있는 경우 회색
합이 100% 넘지 않으면 안되고 그중 하나를 최대치
까지 했을 때 100%로 넘지 않으면 안된다

(2) 사안의 경우

성분 A 최대치 및 나머지 최소치는 110%로 100%이하
성분 B 최대치 및 나머지 최소치는 110%로 100%이하
성분 C 최대치 및 나머지 최소치는 100%로 100%이하
기재 불비의 사항이 있다.

3 항항 3 - 법 423 4항 2호 및 기재 불비 사항

(1) 근거 ① - 및. (정밀한 기재)

수요 5항에 대한 정밀한 기재가 필요하게 항항
1 및 항항 3을 이룬 기본적인 종에 대한 기재는
문; 보정 필요함

(2) 근거 ② - 상기 D 성분



항상 1과 항상 2이 D 섹션에 대한 기제가 없이
상기 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3) 권리 ③ - 0.1% 이상

수익적 표현은 하반을 표현할 때 섹션을 위해서
표현이 필요 하다. 명확하지 않다.

4 항상 4 - 법 433 4항 2조

(1) 권리 ① - 모든 (다음 인용)

항상 3은 이미 항상 1과 2를 인용 하는데
이로써 인용하는 것은 다음 인용으로 승5로
6항 위반이다

(2) 권리 ② - 약 (명확성)

약 50% 라는 표현은 55%, 60% 등
가장한 용어가 될수 없음으로 개성이 결여
명확 하지 않다

(3) 권리 ③ - 가제 권리

불변함을 인용하면서 방법 방법의 광복을 전
가제에 관련 문제가 가능하다

5 항상 5 - 카테고리 불명

레벨 불명 인용하면서 이제 개방 중기 설명
문제는 없다 권리 0

6. 존속항 문제

존속항 등은 관항들의 문제는 2개만 가지고 있다

II 실습(2)

2

1. 원출원 보정의 이유 - 법 36조 2항

분할 출원의 출원일 소용 호로 인해 출원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이 될 수 있다

2. 원출원 항 범위 보정

(1) 항 1, 2, 3

~~항~~ 변경 없이 유지

(2) 항 4

삭제

(3) 항 5

항 2 또는 항 3 있어서 (A)의 성분 A와 성분 B가 상기 성분 C와 상기 성분 D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코어기 교환 제조 방법

3. 분할 출원 항 범위

성분 A와 B, C로 이루어진 리튬 배터리를 A는 40-60% 용량 B는 30-50% 용량 C는 20-30% 용량 인 리튬



로 D성분은 0.1% 증량 이상 이 함유되어 특수한 환경
조건으로 약 50% 이상 이탈하게 성형 하는 계상 계법.

II 실문(3) 2.5

1 클레임 - 원심4 조61조

특히 클레임 제하 의 구분 은 다 른 특 히 원 심 4 조 61 조
에 반 대 로 성 형 하 는 것 이 다

2 원심4 대상 9권 - 조61조각호

클레임 제하 의 구분 은 다 른 특 히 원 심 4 조 61 조
에 반 대 로 성 형 하 는 것 이 다

3 사안의 경우

(1) 2호 중 - 클레임 원심4

특히 클레임 제하 의 구분 은 다 른 특 히 원 심 4 조 61 조
에 반 대 로 성 형 하 는 것 이 다

(2) 2호 중 - 변형기법 등

특히 클레임 제하 의 구분 은 다 른 특 히 원 심 4 조 61 조
에 반 대 로 성 형 하 는 것 이 다

(3) 2호 중 - 특정 기술

특히 클레임 제하 의 구분 은 다 른 특 히 원 심 4 조 61 조
에 반 대 로 성 형 하 는 것 이 다

(4) 3호 - 변형기법

특히 클레임 제하 의 구분 은 다 른 특 히 원 심 4 조 61 조
에 반 대 로 성 형 하 는 것 이 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계속)



< 문제-17 >

18

I. 실용시의 체결 3

1. 영아원칙의 법외규위

(1) 최초 당사자. 도인의 재위

공제특허청원의 출원인이 재위된 출원인은 제 42조 1항에 따라 재위된 출원인으로 본다. (제 200조의 2 1항) 공제특허청원의 재위된 발명자 실명, 재명칭 및 다른 제 42조 2항에 따른 출원인에 대한 출원인 명칭을 실 도인으로 본다. (동조 2항)

(2) 보정권 판단시 (제 206조 3항)

제 41조 2항 판단 적용할 때 판단대상이 된다.

(3) 위반시 취급

원문 범위를 넘어 보정시 제 41조 2항 판단 위반으로 거절되며, 정비비용사유. 무사유에 해당한다.

2. 30일변정문의 법외규위

(1) 보정문의 재위 (제 201조 5항)

30일변정문을 재위 시 공제특허청원의 재위된 발명자 실명, 재명칭 등을 최종 30일변정문에 따라 공제특허청원이 보정할 것으로 본다.

(2) 보정권 판단시 (제 206조 4항)

제 41조 2항 3단을 적용할 때 변정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3) 위반시 취급

변정문 범위를 넘어 보정시 제 41조 2항 판단 위반으로 거절되며, 정비비용사유에 해당하나 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II. 실문(2)의 해결 3.5

1. 보정 문헌 - 신규사항추가권

(1) 제47조 2항 전단, 제205조 3항
공시출원 권리 지출한 발명의 권리 청구범위 또는 권리 범위에
기재된 사항
에서 ¹⁰이어야 한다.

(2) 제 1조 2항 후단, 제205조 4항
제 1조 2항에 따른 최종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

2. ^{6조} 1조로 철회한 명세서 관련 단문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해석 (3)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비견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심사관 판단의 재검정 - 보정법

(1) 대비대상
최종명세서 받은 애초, 제47조 2항 전단에 따라 ~~추가된 사항~~
~~범위~~ 원문과 대비하여서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문 신규사항 추가권 위반 여부 - 각주
甲의 청구항 1 보정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려는 보정이므로 원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다.

(3) 소결
~~심사관은 원문 대비하여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심사관 판단 보정법하다.~~

II. 실문(3)의 해설

1. 무심판의 청구취지

“甲의 특허등록 제100호의 청구항 1항 발명의 등록특허를 무심판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2. 청구이유의 요지

(1) 乙의 청구인적격

아해관계인은 무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제133조 1항),
乙은 甲으로부터 ~~침해금지청구권을~~ ~~구한~~ ~~바~~ ~~아해관계~~
있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무심사유 - 제133조 1항 6호

1) 제133조 1항 6호

甲의 특허등록 제100호의 청구항 1항에는 제41조 2항 2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발명의 무심사유가 ~~있다~~ 있다.

2) 내용

~~甲의 청구항 1항은 A타 9호 3세대는 스마트폰은 甲이 3세대
출원일 때 제출한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벗어난 발명이다.
제41조 2항 2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발명~~

① 甲의 발명 내용

甲은 청구항 1을 ‘A타 9호 3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발명
하였다.

② 甲이 제출한 명세서

甲은 3세대출원일 때 ‘A타 B호 3세대 스마트폰’, ‘A타 B호

구성의 스마트폰'을 청구항에 기재하였다.

③ 원문범위를 벗어난 보정.

'A가 g로 구성된 스마트폰'은 명세서에 "형식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상의 기술자가 2016.5.1.의 기술상에서 기재하여 명세서에 부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다.

④ 소결

甲의 특허를 제100호에 청구항 행에는 제47호 중 전단 뒤반의 무사수가 존속한다.

II. 실문(4)의 해결

6.5

1. 특허발명의 하위.

(1) 신기술 의 보정 (제29조 1항)

공시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권리발생의 동일한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

(2) 전반의 의 보정 (제29조 2항)

개념이 지도가 미미한 것이 특허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권리발생의 범위 중의 개념이 차이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받을 수 없다.

(3) 甲 특허의 출원일 특장 - 2016.5.1.

甲이 2016.7.1. '방사선반사'를 이루는 한 보정에 대응해 보정서를 기재하였으나 보정서 기재시에도 출원일이 소용하므로

출원일은 2016. 5. 1. 이다.

(4) 증거자료 1의 인용발명 권역 - 권역

증거자료 1은 2016. 4. 1. 발원된 권역물기에 기재된 바 출원일 (2016. 5. 1.) 권 공시된 발명이다. (29쪽 1항 2c)

(5) 증거자료 2의 인용발명 권역 - 식

증거자료 2는 출원일 (2016. 5. 1.) 후인 2016. 6. 1. 공시된 바 인용 발명 권역 같다.

(6) 소결

부외 청구항 3항 발명은 증거자료 1에 공시된 수단 C1에 의해 시프트를 제공하는 기어에나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 구성 상의 차이로 수단 C1으로 보아 수단 C1에 의한 청구항 3항 발명을 통의 구성과 동일하게 발명할 수 있어 권역이 없다

2. 처리범위 변경의 항변

(1) 취제

특허발명이 출원된 공시된 권리 동일하게 한 경우 목적성도 동일 권역으로 권리범위 인정할 수 없다."

(2) 취의 주장

청구항 3항 상의식 부제되므로 권리범위 변경되기 참해야지

3. 처리내용의 항변

(1) 취제

진정성을 이유로 목적이 될 것이 항변한 경우 특정한 사안이 있는 한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권역범위를 허용할 수

있다."

(2) 丙의 주장

[채정 3] 사귀는 것은 권능을 이루는 것으로 된 것이
명백하므로 ^{甲처} 권능이 있다.

4. 자유실시가능의 행안

(1) 甲씨

" 실시발명이 출원된 권리발명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권리발명
부터 동상의 개량이 동에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술적 특이성이나 대비성 정도가 권능에 미치지 못한다."

(2) 乙의 주장

이 실시 '수단'에 의한 개량은 출원된 권리발명
중과동 1차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동에게 실시하는 것은
자유실시가능하게 개량에 관여 아니다. [출]



〈문제-2〉

I 실문 (1)의 해설.

1. 관습성 의미 및 취지 (제45조)

(일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할 수 있다.
출원인 권의 위함이다.)

2. 사행성 - 일군의 발명 요건

- ① 청구항 간에 기술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
- ② 청구항 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을 것
- ③ 그 기술적 특징은 선행발명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것

3. 주장의 논거

(1) 1항과 2항의 기술적 상관관계

1항은 불렌, 2항은 불렌의 작동장치에 대한 발명이므로
기술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2) 1항·2항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 잉크관

1항에는 '투명잉크관' 2항에는 '색변환잉크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인 '잉크관' 이 있다.

(3) 잉크관은 선행발명에 비해 개선된 것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잉크관은 선행발명 1, 2, 3 에 비해
개선된 기술적 특징이다.

(4) 선거

1항, 2항 일군의 발명이다.

II. 실용(2)의 차이

1. 신규성 의미 및 차이 (제1항)

동일한 발명기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동일성의 여건 차이

1) 신형발명과 차이가 있다면,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관을 기술의 불가. 선택. 변경이 지나리 않고 새로운 고안도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특허~~ 출원발명은 신형발명이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신용~~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장단을 벗어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신규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주장의 논거

(1) 제1항의 인용발명 기의 차이

제1항 발명은 특정인공관 (2)으로 구성되어있고 인용발명은 인공관 (2')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

① (2')에서 (2)로 변경이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관을 기술의 불가. 선택. 변경이 아니고

② (2')에서 (2)로 변경하여 제1항 1항 발명에 새로운 고안이 발생하므로

③ 제1항 1항이 인용발명 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II. 실용(3)의 해결

5.5

1. 진보성 의의 및 취지 (제2항 2호)

개념이 제도가 미치는 기조가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통상의 개량이
필요성을 보지 못하게 배양할 수 있는 진보성이 있다.

2. 복수 구성요소의 진보성 요건 취지

“복수 구성요소 이루어진 결합방식이 각각 구성요소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계로서 본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복수의 구성요소 분해하여 개별 구성요소가 공인된 것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하여 결합된 발명 전체
중심의 구성요소의 진보성을 판정하여야 하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발명 관계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선행발명 결합요건 취지

“선행발명에 공인발명들은 결합하면 특허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사 등이 증명 제시되었거나, 기술상식·기술수준·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명경향, 상계의 연구 등에 비추어 통상
의 개량이 공인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특허발명을 발명
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주장의 논거

(1) 제2항 발명은 결합발명

제2항은 (1), (3), (4)의 구성요소를 이루어진 결합발명
에 해당한다.



<문제-3>

16.5

I. 선택(1)의 개결

1. 조약위반권 주장 전제 여부 - 2점

(1) 의의 및 취지 (제54조 1항)

발명의 국제적 보상을 위해 일정한 범주에 출원된 사항을 인정한다.

(2) 사안

출원을 발하는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발명자는
무엇 ^{출원을 발하는} 기초출원인 또는 원출원인라, 일부계속출원으로써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한 바, 출원인 사항가 인정된다.

2. 각 청구항 특이성 판단사실

(1) 출원인 사항의 기준 (제54조 1항)

위반권 주장의 기초출원발명자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사항
인정된다.

(2) 청구항1 - 2017. 5. 1.

청구항 1항 발명은 "비지출원" 발명자와 동일하므로
출원인 2017. 5. 1.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청구항2 - 2017. 8. 1.

청구항 2항 발명은 "비지출원" 발명자와 동일하지 않다
"일부계속출원" 발명자와 동일하므로 2017. 8. 1.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청구항3 - 2018. 2. 1.

청구항 3항 발명은 "비지출원" 및 "일부계속출원" 발명
과 동일하지 않다므로 국제특허출원인 2018. 2. 1.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특허청항1 기결이후 타당성 - 소결

(1) 신규성 의미 및 범위 (제29조 1항)

공시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공시발명이나 출원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었다.

(2) 소결

인용발명 1은 청구항 1의 특허조건 중 novelty인 2017. 5. 1. 이후인 2017. 6. 1. 공개된 발명이므로 출원 전 공시발명이 아닌 바 인용발명 적격이 없다. 신규성 기결이후 부당하다.

4. 청구항 2 기결이후 타당성 - 소결

(1) 단일 선행기술 연결 체계 공시발명인 1에 비하여
 "신규성이 부재하다" 하기 위해서는 출원 발명인 모든 구성이 선행 공시발명에 그대로 나타있어야 한다."

(2) 소결

① 인용발명 1 인용발명 적격이 있으나 인용발명 2는 2017. 5. 1. 후 2017. 9. 1. 공개된 인용 발명 적격 없다.

② 인용발명 1의 청구항 2의 구성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

③ 신규성 기결이후 부당하다.

5. 청구항 3 기결이후 타당성 - 소결

(1) 진행성 의미 및 범위 (제29조 2항)

특허청항1(2017) 2017. 5. 1. 이후에 발명된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 3이다.

(2) 소결



인용발명 1, 2, 3 모두 2016. 2. 1. 권 공리된바 인용발명 권공되었다.
3항이 통의 개량이 인용발명 1, 2, 3에 대해 쉽게 발명할 수
있고 개량이 타당할 것이므로 공격시 인용발명 1, 2, 3에 대해 인용발명 1, 2, 3에

II. 실용 (2)의 해결 - 실용 1)

1. 미공 출원인에 대한 권공 우선권 주장 적법 여부 - 부당성

(1) 시각적 2인 전자여부 - 작주

출원인이 "미공 출원인" 일인 ~~2017. 6. 1.~~ 2017. 5. 1. 보다
1년이 전인 2016. 7. 1. 에 이루어진 바 시각적 2인 위반이다.
(제54조 2항)

(2) 과

출원이 개량되지 않는다. 우 출원의 선의 부당될 뿐이다.

2. 일부 계속출원인으로 소급 여부 - 작주

일부 계속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적법 여부, 상항 발명이 '일부 계속출원'
발명과 제 C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 아니므로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3. 최후항 1 특정한 판단시점 - 2016. 2. 1.

2016. 2. 1.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개량이 타당 여부 - 작주

㉠ 출원은 (2016. 2. 1.) 전인 2017. 1. 1. 공제된 인용발명 1, 2, 3
인용발명 권공 인정되고

㉡ 최후항 1은 발명이 인용발명 1, 2, 3에 개량되어 있다



③ 신규서 기결이거 라당하다.

II 실용(가)의 개척 - 실시권 2) 3. 5

1. 마중원출원일은 신규서 - 신규.

우선권유광 시가3000? 위반을 했었다.

2. 원부제출후미양? 신규서부 - 신규

① 2017. 6. 1.로부터 1년 전인 2016. 7. 1. 우선권유광출원한 바
시각적인 만족한 ② 2항 ^{발명} 발명 ^{동일} 동등하게 ^{추진} 추진 ^{기여} 기여 ^한 한 ^것 것
2017. 6. 1.로 선행한다.

3. 취항 2 판단시점 - 2017. 6. 1.

2017. 6. 1. 이다.

4. 신규서 인정 여부 - 신규

① 인용발명 2 인용발명 적격 없 ② 인용발명 1에 2항 모든 구체
자 있 기 있 어 상 ③ 신규서 인정된다.

5. 진행서 인정 여부 - 신규

① 인용발명 2 인용발명 적격 있다.

② 인용발명 1과 2항 발명은 구성 C 부가여부에 차이가 있다.

③ 인용발명 1에 공지되었기 있 어 상 은 구 성 C 를 구 하 는 것 이
특 성 의 가 순 라 기 에 동 이 하 는 바 기 이 어 는 것

④ 2항 진행서 인정된다.



IV. 실용 (4)의 해권

1. 재심사청구 의의 및 취지

출원인은 개월제 등본송달일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할 수 있다.
 (제177조 2), " 재심사청구를 통해 개월제를 다룰 수 있게 하여
개월제 불복심판과 재심사청구 수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위해)

2. 개월제 불복심판 의의 및 취지

개월제 등본송달일 부터 3개월 이내 재심청구 불복심판 청구 수 있다
 (제132조 1) 출원인 본인 사항이다.

3. 공통점

개월제 등본송달일 3개월 이내에 한다.

4. 차이점

이미 재심사 청구 있었던 경우, 불복심판의 경우 재심사청구할 수 없다.
 (제177조 2 1항 각호), 개월제 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이,
재심사청구 시 지식재산청에서 심사관이 심판한다.

5. 재심사청구의 장엄

(1) 공동출원인 경우 단독으로 가능

공동심판청구 강제되는 개월제 불복심판과 다르기 (제139조 3호)
재심사청구는 과거대로원칙 적용되기 후 공동출원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제11조 1항 본문)

(2) 특허수권사항 없음

개월제 불복심판 청구는 특허수권 사항이나 (제1조 7c) 재심사청구
아니다.



(3) 변경가능재심사 청구가 변형이 가능하다. (제41조의2 1항)

<문제-4>

I. 실문(1)의 해결

1. 제42조 4항 2단 99 및 100

청구항이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41조의2
 바래 청구항에서는 동일한 기재만이 청구된 것이다." (41비)

2. 제42조 6항

종속항을 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의한다.

3. 청구항 1.

거절이 없다.

4. 청구항 2. - 제42조 4항 2단 99반

(1) 조성을 발명적 경우 제외

조성을 발명적 경우 그 조성을 부각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조성비 기재 문단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재비 기재 해당한다."

(2) 제42조 4항 2단 99반

성분 A를 최대성분량 60%로 정할 경우 성분 B의 최소

성분량 30%, 성분 C의 최소성분량 20%로 정하여도60 + 30 + 20 = 110 이므로 100%를 초과하는 바 존재하며문단이 있어 제42조 4항 2단 99반이다.

5. 청구항 3 - 제42조 4항 2c, 6항 위반.

(1) 제42조 4항 2c 위반

① 상기 청구항 D가 청구 1, 2에 기재된 것 이외에
'상기 청구항 D'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② 청구항 2의 제42조 4항 2c 위반의 기재불비를 승계한다.

(2) 제42조 6항 위반.

'청구항 1 및 청구항 2'라고 기재하여 특이사항(5c)
위반이다.

6. 청구항 4 - 제42조 4항 2c, 6항 위반

(1) 제42조 4항 2c 위반

① 인용하는 청구항 2 또는 3은 제3항에 관한 발명인데
청구항 4는 제2항의 발명이고 ~~제3항의 발명~~이 불명확하다.

② 청구항 2, 3의 기재불비를 승계한다.

(2) 제42조 6항

인용하는 청구항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청구항
3이 또 2이상의 항을 인용하므로 ~~사행성~~ 6항 위반이다.

7. 청구항 5 - 제42조 4항 2c, 6항 위반

(1) 제42조 4항 2c 위반

① 청구항 4는 제조방법인데 종속항인 청구항 5는 제구조체이다.
발명의 범주 불명확하다.

② 청구항 4 기재불비 승계한다.

(2) 제42조 6항



~~제3항 4 기재방법 삭제한다.~~

B. 결론

~~제3항 2, 3, 4, 5에 제42조 4항 2은, 6항 기입이 있다.~~

II. 실용(2)의 해결

2

1. ~~분할출원의 소결~~

분할출원 인출신청은 소결이 인정되면 바 (제52조 2항)

분 기재방법 분할출원시 제36조 신설된 위반이 존재될 수 있다.

2. ~~유출된 기재방법 보정~~

(1) ~~결론 삭제 보정.~~

제36조 신설된 규정에 위반을 피하기 위해 분할출원시 유출된 제36조 신설된 규정에 대한 보정을 유출된 시점에 삭제보정하여야 한다.

(2) 소결

~~제3항 4항^{5항} 삭제보정 한다.~~

3. ~~분할출원의 기재방법.~~

실용부분 A는 전체구분은 40~60%, 성분 B는 30~50%, 성분 C는 20~30% 인 제36조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SI 단계나 S2 단계를 포함하는 제36조의 기재방법.

Ⅱ 실용(3)의 해조 **2.5**
1. 우선심사 (제1조)

지식재산위원회 제1조 2항의 경우 우선심사하게 한다.

2. 우선심사 사유

(1) 1조

출원명세서 또는 출원인이 아닌 자가 공표된 출원발명을 생략하여
안정하는 경우

(2) 2조

시행명령을 제하는 출원으로 간접처리령의 안이 타는 경우

(3) 3조

시행명령을 제하는 출원으로 내건다 제발. 대장. 부제 객신제발 경우

3. 2권

(1) 제3차 실시 (1c)

제3차가 실시하는 경우 무은 출원명세서에 우선심사받을 수 있다.

(2) 자기실시 (2c)

무이 출원발명을 공표시 실시중인 경우 우선심사받을 수 있다.

(3) 특수기술 (2c)

시행명령에 의해 무은 출원발명이 천문경제사제인 특수기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우선심사 받을 수 있다.

(4) 벤처기업 (2c)

시행명령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자인 무은 벤처
기업임을 입증하여 우선심사 받을 수 있다.